

신한대학교 감사운영세칙

2025.09.08. 제 정 2025.12.19. 일부개정

2026.06.22. 일부개정

전 문

제1장 총칙	1~3
제2장 감사운영위원회	4~14
제3장 피감사 단위	15~17
제4장 정기감사	18~22
제5장 특별감사	23~28
제6장 이의제기	29~30
제7장 징계	31~33
제8장 개정	34~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칙은 본교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및 각 산하기구 등의 회계 감사를 통하여 구성원의 효율적인 감사와 각 학생자치기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여 자치기구로서의 신뢰와 올바른 대학 문화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칙은 다음 각 호의 회계 감사 및 감사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용한다.

1. 총학생회
2. 단과대학 학생회
3. 동아리연합회
4. 학부(과)·전공 학생회
5. 상설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단체

제3조(세칙 외 판단) 본 세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감사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2장 감사운영위원회

제4조(지위) 감사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감사를 원활히 운영하고, 투명 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기구로서, 감사 및 이와 관련된 징계 조치에 관하여서는 독립된 지위를 지닌다.

제5조(구성)

- ① 감사운영위원회의 인사 결정권은 감사운영위원장이 가진다.
- ② 감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운영위원회의 정원은 최대 7인으로 하며, 제3호의 정원 충족 시 제4호는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사운영위원장
 2. 감사운영부위원장
 3. 감사운영위원
 4. 임시 감사운영위원
- ③ 동일 단과대학 소속의 위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15조 각 호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 및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전공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단)

- ① 감사운영위원장은 감사운영위원회의를 대표하며, 감사운영위원회의의 의장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② 감사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운영위원 중 1인을 감사운영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운영부위원장은 감사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감사운영위원장의 결위 시 그 직을

대행한다.

- ④ 감사운영위원장은 감사운영위원회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⑤ 감사운영위원장은 임기만료나 사퇴, [총학생회칙] 제27조 혹은 제38조에 의한 탄핵을 제외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⑥ 감사운영위원장은 매년 12월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간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하 내용은 본칙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임시 감사운영위원)

- ① 임시 감사운영위원은 감사운영위원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원활한 감사의 운영을 위해 감사운영위원을 대체 하고 감사 업무를 진행한다. 단, 의결권은 지니지 아니한다.
- ② 당해 연도 감사운영위원회의 최초 감사 시행 공고로부터 48시간 이후까지 감사운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위원이 공석인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 대학 집행위원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을 임시 감사운영위원으로서 감사 운영위원회에 파견하여야 한다. 이때, 단과대학 집행위원 직은 사임하지 아니한다.
- ③ 임시 감사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감사운영위원 모집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의무)

- ① 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② 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고 이전에 회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피감사 단위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 결과의 최종 공고 이전까지 피감사 단위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진행한 모든 업무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감사운영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문서 기록 및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존·보관하여 후대 감사운영위원회에 승계하여야 한다.
- ⑥ 본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무 처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칙]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업무 및 권한)

- ① 감사운영위원회는 본칙 제2조 각 호의 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사계획 수립
 - 2. 감사 계획 공고
 - 3. 예산안 편성 절차 준수에 대한 심의
 - 4.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준수에 대한 심의
 - 5. 예산 집행 절차 준수에 대한 심의
 - 6. 본칙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한 의결
 - 7. 감사 결과 공고 및 보고서 작성

- ② 감사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감사자료 제출 요구
 - 2. 감사자료 미비 및 재정 운용 미흡에 대한 시정 요구
 - 3. 피감사 단위 내지 피감사 단위의 재정 운용에 연관된 본교 총학생회 회원에 대한 감사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
 - 4. 본칙 제7장에 따른 징계 조치
 - 5. 그 외 본칙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③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정기감사
 - 2. 특별감사

제10조(감사운영위원회의)

- ① 감사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1. 정기감사 시행 및 그에 관한 업무 수행
 - 2. 특별감사 시행 및 그에 관한 업무 수행
 - 3. 피감사 단위의 이의제기 심의
 - 4. 제15조 각 호에 대한 징계 심의
 - 5. 감사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 6. 그 외 감사운영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감사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은 감사운영위원장으로 한다. 단, 감사운영위원장의 유고 시 감사운영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③ 감사운영위원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중 의결권을 가진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④ 감사운영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 집행위원회 및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에 관한 의결권을 지니지 아니한다. 단, 본조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의결 결과를 정할 수 있다.
- 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감사운영위원회의의 개최 불발 또는 중도 폐회의 경우, 감사운영위원장의 판단 하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결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설명회)

- ① 감사설명회는 피감사 단위의 감사 운영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피감사 단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설명회이다.
- ② 감사운영위원회는 임기 시작 이후, 감사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 하에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③ 감사설명회는 당해 연도 보궐선거가 종료된 일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감사설명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1. 감사 유형 설명
 - 2. 감사 유형 별 감사 진행 과정
 - 3. 서류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4. 당해 연도 감사 운영 계획

5. 그 외 감사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였을 때 공지가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 선출)

- ① 감사운영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의 간선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감사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위원장 선거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 등록 기간
 3. 후보자 등록 공고
 4. 후보자 공청회
 5. 투표
 6. 당선 공고
- ③ 감사운영위원장 입후보 등록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교 재학증명서
 2. 후보자 서약서
 3. 감사운영위원장 입후보 지원서
- ④ 제2항 제1호는 제2호의 시작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제2항 제2호의 기간은 평일 기준 3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제2항 제3호는 제2호 종료일의 익일 자정까지 공고한다.
- ⑦ 제2항 제4호와 제5호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당일에 진행한다.
- ⑧ 제2항 제5호의 진행 방식에 관한 사항 및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감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⑨ 감사운영위원장 당선자 결정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 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출마의 경우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⑩ 감사운영위원회는 제2항 제5호의 종료일 자정까지 제2항 제6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⑪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불발, 투표수 미달, 후보자 미등록 등을 사유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감사운영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3조(탄핵 및 해임)

- ① 감사운영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은 감사운영위원장·감사운영부위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감사운영위원장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1. 본교 총학생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
 3. 확대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 ③ 감사운영위원의 해임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자 1/3 이상의 연서
 2.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
 3.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발의된 안건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칙] 제38조에 따라 의결한다.

제14조(임기) 감사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본교 총학생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3장 피감사 단위

제15조(구분) 피감사 단위란,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위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2.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 집행위원회
3.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4.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및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
5. 상설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그 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단체. 단, 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는 특수감사로만 한다.

제16조(의무) 피감사 단위는 학생자치기구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명함을 입증하고, 원활한 감사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감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운영위원회의 지시 이행
2. 당해 연도 회계 자료의 보관

제17조(권리) 피감사 단위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2. 감사결과 최종 공고 이전까지의 감사 내용에 대한 기밀 보장

제4장 정기감사

제18조(정기감사)

- ① 정기감사란,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감사이다.
- ② 정기감사는 본교 총학생회 회계연도 구분에 대해 각 1회씩, 총 4회 실시한다.
- ③ 정기감사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감사한다.

제19조(감사자료)

- ① 정기감사의 증빙자료(이하 감사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당 학기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2. [재정운용세칙]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예산 증빙물)
 3. 예산편성 절차 준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회의록 등의 문서
 4. [재정운용세칙]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결산 증빙물)
 5. 해당 학기 입출금 거래내역서 혹은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류
- ② 피감사 단위는 감사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양식에 따라 감사자료를 작성 및 취합하여 감사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시행)

- ① 정기감사의 전체기간은 감사 시행 공고로부터 감사 결과 최종 공고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감사 시행 공고

2. 감사자료 1차 제출 기간
 3. 1차 감사 기간
 4. 시정 요구
 5. 감사자료 2차 제출 및 이의제기 기간
 6. 2차 감사
 7. 감사 결과 최종 공고
- ⑫ 제1항 제3호 시행 결과, 시정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위에 한하여 제4호 내지 제6호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⑬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자료 1차 제출 기간 시작일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학생이 확인할 수 있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감사 세부 일정
 2. 제출 감사자료 및 제출 방식
 3. 감사 대상
 - ⑭ 제1항 제2호의 기간은 5일로 한다.
 - ⑮ 제1항 제3호의 기간은 제2호의 마감일의 익일부터 7일로 한다.
 - ⑯ 감사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3호 마감일의 익일 12시까지 피감사 단위의 장에게 제1항 제4호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⑰ 제1항 제5호의 기간은 제4호가 공고된 일자로부터 5일로 한다.
 - ⑱ 제1항 제6호의 기간은 제5호 마감일의 익일부터 7일 차가 되는 날 18시까지로 한다.
 - ⑲ 제1항 제7호는 제6호 마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학생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고한다. 단, 제10항의 경우, 해당 단위에 한하여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 종료일까지 이를 연기한다.
 - ⑳ 피감사 단위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종료일까지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기간 이내에 감사자료 제출 기한 연기에 관한 요청서를 감사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 ㉑ 제10항에 의한 제출 기한의 연기는 제1항 제6호의 마감일 자정으로부터 최대 72시간까지로 한다.
 - ㉒ 감사운영위원회는 제10항에 의한 요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단위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㉓ 제11항에 의해 연기된 기간 내에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출되었을 경우, 감사운영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감사결과 최종 공고에 대해서는 제9항에 따른다.
 - ㉔ 제1항 제1호의 공고일은 매 회계연도 구분의 종료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학기 회계에 관한 결산감사의 공고일은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감사 결과 공고)

- ①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 업무가 종료된 이후, 감사 결과를 재학생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 결과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감사 대상

2. 감사 담당자.
3. 제출 자료 및 재정 운용에 대한 감사 결과
4. 징계 부여 여부 및 부여 시 징계 내용
- ③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 종료 이후,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감사로 부여된 주의 및 경고의 수와 그 사유, 누적된 주의 및 경고의 수와 그 시점 및 사유가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재학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22조(업무 분장)

- ① 제15조 제1호에 대한 감사 업무는 감사운영위원장의 주관 하에 전체 위원이 참여한다.
- ② 제15조 제3호에 대한 감사 업무는 감사운영부위원장의 주관 하에 전체 위원이 참여 한다. 단, 부위원장의 결위 시 위원장이 주관한다.
- ③ 제15조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감사 업무는 감사운영위원회 구성원 1인당 제2항에 해당하는 단위 하나와 해당 단위 소속의 제4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이에 따른 업무 분장 시 특정 인원에게 과하게 업무가 편중될 경우, 감사운영위원회의의 의 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 한해 업무 분장의 조정이 가능하다.
- ④ 제15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대한 감사 업무는 감사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분장한다.
- ⑤ 감사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결위, 유고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 한해 업무 분장의 조정이 가능하다.
- ⑥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든 업무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분배 이후, 감사운영위원회의에서 교차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특별감사

제23조(정의) 특별감사는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감사 이외에 재정의 운용에 있어 부정이 의심될 경우 재학생의 요청에 의해 시행하는 감사이다.

제24조(시행 사유)

- ①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본교 총학생회 정회원 1/20의 요구
 2. 학생자치기구 정회원 1/5의 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
 4. 확대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2 이상의 요구
 5.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2 이상의 요구
 6. 감사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 단, 재학생으로부터 접수된 재정 운용 비위에 대한 신고를 기반으로 한다.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형식으로 감사운영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문서의 양식은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1. 감사 요청 단위

2. 감사 대상
3. 감사 요청 사유
4.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의 연서. 단, 실명 및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를 요청, 혹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5조(감사자료)

- ① 특별감사의 감사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당해 연도에 가결된 모든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 증빙물
 3. 감사 시행 공고 시점까지의 집행에 대한 결산안
 4. 결산 증빙물. 단, 감사 시행 공고 시점까지 집행된 지출에 한하여 제출한다.
 5. 예산편성 절차 준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회의록 등의 문서
 6. 당해 연도 입출금 거래내역서
 7. 감사 시행 사유에 따라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 ② 피감사 단위는 감사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양식에 따라 감사자료를 작성 및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시행)

- ① 특별감사의 전체기간은 제24조 제1항의 발생일로부터 결과 최종 공고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특별감사 발의 접수
 2. 감사 시행 공고
 3. 감사 자료 1차 제출 기간
 4. 1차 감사 기간
 5. 1차 감사 결과 보고 및 시정 요구
 6. 감사 자료 2차 제출 및 이의제기 기간
 7. 2차 감사
 8. 감사 결과 최종 공고
- ② 특별감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감사 대상 단위는 감사 시행 공고 시점부터 전체기간의 종료일까지 예산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필수적인 집행에 한하여 감사운영위원회 회의 인준 하에 집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4호 시행 결과, 시정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5호 내지 제7호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④ 감사운영위원장은 제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감사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1항 제2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감사 시행 사유. 단, 감사를 요구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감사 세부 일정
 3. 피감사 단위의 재정 운용 비위 관련 신고 방법
- ⑥ 감사운영위원회는 감사 대상 단위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1. 감사 시행 사유. 단, 감사를 요구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감사 세부 일정
 3. 제출 자료 및 제출 방법

4. 특별감사 전체기간 중 예산 집행 정지에 관한 안내

- ⑦ 제1항 제3호의 기간은 제2호의 공고일의 익일부터 5일로 한다.
- ⑧ 제1항 제4호의 기간은 제3호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7일로 한다.
- ⑨ 제1항 제5호는 제4호 마감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⑩ 제1항 제6호의 기간은 제5호의 공고일 익일부터 5일로 한다.
- ⑪ 제1항 제7호의 기간은 제6호의 마감일 익일부터 7일로 한다.
- ⑫ 제1항 제8호는 제7호의 마감일의 익일 10시까지 공고한다. 단, 제3항의 경우 제4호 종료일의 익일 10시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⑬ 감사운영위원회는 피감사 단위가 감사자료의 제출을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⑭ 감사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5일까지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결과 공고) 특별감사의 감사 결과 공고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제28조(업무 분장)

- ① 특별감사의 감사 업무에는 감사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 분장은 감사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이의제기

제29조(이의제기 접수)

- ① 피감사 단위는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1차 감사의 결과에 이의가 존재할 경우,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감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감사운영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이의제기 심의)

- ① 감사운영위원장은 이의를 접수한 이후 72시간 이내에 감사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1. 이의제기의 타당성 심의
 - 2. 해당 감사 결과 도출 사유 심의
 - 3. 분항 제1호 내지 제2호 간의 충돌 여부 심의
 - 4. 감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정정 여부 의결
- ② 감사운영위원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이의제기 단위의 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31조(목적) 본칙에서 부여하는 징계의 목적은 [총학생회칙] 및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2조(징계의 종류)

- ① 감사운영위원회는 피감사 단위의 재정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총학생회칙] 및 본칙

에 위배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② 피감사 단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피감사 단위의 재정운용에 간섭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학생자치기구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운영위원장은 [총학생회칙] 및 세칙에 따른 해당 인원의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③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위에 주의를 부여한다.
 - 1. 감사자료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단, 4일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주의 2회를 부여한다.
 - 2. 감사자료에 기재 누락 또는 금액 오기가 있는 경우, 1회당 주의 1회를 부여한다.
 - 3. 제출한 감사자료 중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누락된 자료 1부당 주의 1회를 부여한다. 단, 결산 증빙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주의를 부여한다.
- ④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경고를 부여한다.
 - 1. 결산 증빙물 제출 미비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집행이 존재하는 경우, 1회당 경고 1회를 부여한다. 단, 그 액수가 해당 회계연도 구분의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고 1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 2. 총학생회비 또는 배정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회당 경고 1회를 부여한다.
 - 3. 해당 학기 예·결산안과 실제 재정 운용에 차이가 존재하여 학생자치기구의 보유 재정이 감액되었을 경우. 이후 감액된 비율 5%마다 경고 1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 4. 감사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기타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재정 질서 훼손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⑤ 감사운영위원회는 피감사 단위의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계산한다.
 - 1. 경고 2회를 부여받은 단위는 징계 사실과 함께 사과문을 제출·게재한다.
 - 2. 경고 3회를 부여받은 단위는 학생 임원 장학금을 30% 감면하고, 일정 기간의 활동 및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 이때, 징계 기간은 감사운영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 3. 경고 4회 이상 부여받은 단위는 해당 단위의 회장단 탄핵 및 회장단과 재정 업무 담당 집행위원의 차기 학생자치기구 활동 자격 제한에 대한 안건을 전체학생대표 자회의에 상정한다. 또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해당 단위의 예산 집행 권한을 제한한다.
- ⑥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집행 재정 전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금액은 해당 단위의 차기 연도 이월금으로 편입하며, 당해 연도 예산으로 사용·배당할 수 없다.
- ⑦ 제4항 제5호의 경우, 해당 행위가 학생자치기구의 재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주의 및 경고 누적 횟수와 관계없이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⑧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주의 및 경고의 유효기간은 부여 시점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주의 및 경고의 부여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회장단 혹은 위원장단 중 1인 이상이 이후 해당 단위의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재직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 ① 제32조에 따른 징계는 감사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 ② 감사운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 ③ [총학생회칙] 제136조 제6항에 따른 연서가 발생한 경우, 징계 재심의에 대한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제8장 개정

제34조(개정 요구)

- ① 본칙의 개정 요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교 총학생회 정회원 1/20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학생대표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확대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5. 감사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6. [총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으로 인해 본칙의 개정이 필요한 때
- ② 제1항에 의한 개정 요구가 발의되었을 경우, 감사운영세칙 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요구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정안 발의 여부를 의결한다. 단,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 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개정 요구는 총학생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감사운영세칙 개정위원회)

- ① 제34조에 의한 개정 요구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7일 이내에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1. 개정 요구 사유의 타당성
 2. 현행 감사운영세칙의 적법성
 3. 감사운영세칙 개정 여부
- ② 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전원
 2. 감사운영위원회 전원
- ③ 개정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감사운영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 ④ 개정위원회 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결정) 제35조 제4항에 의해 개정 발의 가결 시, 총학생회장과 감사운영위원장은 48 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개정안의 발의 주체는 개정위원회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칙] 제40조 제3항에 따른다.